

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7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연수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평가단들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매년 주민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해온 연수 및 표창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의2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2,800천원(2007년 예산계상)

- 주민평가단 연수 : $40,000\text{원} \times 70\text{명} = 2,800\text{천원}$

사전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07.05.24. ~ 2007.06.02.(1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주민자치위원 연수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단원구선관위 질의 및 회신(2007.04.05)

- 주민자치위원 연수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단원구선관위 재질의 및 회신(2007.04.11)

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사기진작)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평가단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·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②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자치행정과
임 안 자	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강 대 윤
	담당 직위·성명	자치행정담당 김 흥 배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남 규 (행정 3445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<p>제8조의2(사기진작)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평가단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·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</p>

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57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7. 4.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회

수정이유

- 주민평가단원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규정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
수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안 제8조의2 제2항중 “주민평가단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”를 “주민평가단
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함.

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조문대비표

현행	수정안
<p>제8조의2(사기진작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의2(사기진작) ①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원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</p>